

기쁜 좋은 변화,
활짝 웃는 아산

2011년 새해

달라지는 제도



아산시



2011년
달라지는 제도



아산시 분야별 내용

1. 보건복지·여성분야



1.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

● 목 적

- 효 실천문화 보급으로 효도아산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

● 주 요 내 용
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반기별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권 6매 지급
-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
- 목욕은 1매, 미용(커트)은 2매, 이용(조발 및 면도)는 3매 사용

● 관 련 법 규

-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

● 시 행 일

- 2011. 1. 1부터

● 관 련 부 서

-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(☎ 540-2906)

2. 효도수당 지원

● 목 적
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이루고자 함

● 주 요 내 용

-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아산시 관내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가족에게 월 30,000원의 수당을 지급함.
- 수당은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주민자치센터에 신청

● 관 련 법 규

-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
-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● 시 행 일

- 2011. 1. 1

● 관 련 부 서

-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서팀(☎ 540-2906)

3. 기초 노령연금 지급액 증액

● 현 행

- 단독가구 : 월 20,000원 ~ 90,000원
- 부부가구 : 월 40,000원 ~ 144,000원
- 선정기준

가구 구분	선정 기준액	소득·재산 기준	
		소득만 있는 경우	재산만 있는 경우
단독가구	70만원	70만원	1억 6,800만원
부부가구	112만원	112만원	2억 6,880만원

● 달라지는 내용

- 지원금액 증액 미확정
- 선정기준

가구 구분	선정 기준액	소득·재산 기준	
		소득만 있는 경우	재산만 있는 경우
단독가구	74만원	74만원 이하	미 확정
부부가구	118.4만원	118.4만원 이하	미 확정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기초노령 연금법

● 관 련 부 서

-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(☎ 540-2837)

4. 조손가족수당 지원

● 목 적

-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● 주 요 내 용

- 지원대상 :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제외대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

→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

- 지원내용 : 조손가족 수당 월 5만원 지원, 조손가족 학습도우미, 조손가족 성장도우미

- 선정방법 :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 병행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관련법령 :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
- 시 행 일 : 2011. 1. 1

● 관 련 부 서

-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(☎ 540-2892)

5.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

● 현 행

-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 대하여
 - 지원연령 : 24개월 미만
 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

● 달라지는 내용

-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계층 아동에 대하여
 - 지원연령 : 36개월 미만
 - 지원금액 : 12개월 미만 월 20만원, 24개월 미만 월 15만원, 36개월 미만 월 10만원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관련법령 : 영유아보육법
- 시행 일 : 2011. 1. 1

● 관 련 부 서

-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(☎ 540-2411)

6.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확대

● 현 행

-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
 -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% 이하 : 보육료 100% 지원
 -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%초과~60%이하 : 보육료 60%지원
 -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%초과~70%이하 : 보육료 30%지원

● 달라지는 내용

-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
 -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% 이하 : 보육료 100% 지원
-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% 지원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관련법령 : 영유아보육법
- 시행 일 : 2011. 1. 1

● 관련 부서

-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(☎ 540-2411)

7. 보육시설 인가 제한

● 목 적

- 보육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 공급과잉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 기반 조성

● 주 요 내 용

- 보육시설 공급율 150% 이상인 지역 인가 제한
 - 읍면지역 : 도고면
 - 동지역 : 동지역 전체(온양 1 ~ 6동)
- 설치인가 가능지역 공급율 150% 증속될 때 인가제한 가능
 - 기준시기 : 상반기(6. 30), 하반기(12. 31)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관련법령 : 영유아보육법
- 시 행 일 : 2011. 1. 1

● 관 련 부 서

-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(☎ 540-2341)

2. 교육분야

8. 저소득층 고등학생 기숙사경비 지원

● 목 적

-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 경비 지원으로
교육양극화 해소 및 지역우수인재의 애향심 고취

● 주요 내용

-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경비 지원
 - 지원대상 선정 기준 : 충청남도교육청의 “학비감면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침”에 의한 저소득층 학생

● 관련 법 규

- 「아산시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」

● 시행일

- 2011. 3. 1

● 관련 부서

- 교육도시과 교육도시팀(☎ 540-2414)



9.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실시

● 현 행

-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에 친환경유기인증 쌀만 지원
- 쌀 이외 급식비는 교육청, 학부모가 공동 부담
- 지급시기 : 매분기 또는 필요시

● 달라지는 내용

- 관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(친환경 급식재료 점진적으로 확대)
- 중, 고, 특수학교에는 친환경인증 쌀만 협행대로 지원
- 향후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추진 예정

● 관련(조례) 및 시행일

- 관련조례 :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
- 시행 일 : 2011. 3월부터

● 관련 부서

- 교육도시과 친환경무상급식팀(☎ 540-2782)

3. 지방세 분야

10. 지방세 분법 및 세목 구조 조정

● 현 행

- 개정전 「지방세법」은 단일세법으로 16개 세목으로 구성

● 달라지는 내용

-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(총칙), 지방세법(세목), 지방세특례제한법(감면)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·체계화
-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

【지방세목 간소화 내역】

구 분	현 행 (16개 세목)	개 선 (11개 세목)
중복세세 통·폐합	① 취득세 + ② 등록세(취득관련분) ③ 재산세 + ④ 도시계획세	① 취득세
유사세세 통 합	② 등록세(취득무관분) + ⑤ 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+ ⑦ 지역개발세 ⑧ 자동차세 + ⑨ 주행세	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
폐 지	□ 도축세	※ 폐지
현행유지	⑩ 주민세 ⑪ 시장소득세 ⑫ 시장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	좌 동

● 관련 법 규

- 지방세법,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

● 시 행 일

- 2011년 1월 1일부터

● 관련 부서

- 세무과 부과팀(☎ 540-2296)

11. 귀농인 및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신설

● 목 적

-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
- 다자녀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세제 차원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신설

● 달라지는 내용

- 「농어업·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 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/100경감
- 다자녀양육자(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양육)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면제

● 관 련 법 규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, 제22조의 2,

● 시 행 일

- 2011년 1월 1일부터

● 관 련 부 서

- 세무과 부과팀(☎ 540-2296)

12. 「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」 시행

● 목 적

- 지방세 납부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납세자 편의증진, 행정비용 절감과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

● 달라지는 내용

- 2011년 3월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과 은행의 CD/ATM을 통해 통장, 현금카드, 모든 카드로 전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

● 관련 법 규

-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 2

● 시행 일

- 2011년 3월 1일부터

● 관련 부서

- 세무과 징수팀(☎ 540-2298)

4. 환경분야



13.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

● 배경

-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
- 이에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정(2011. 1. 1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
● 구제대상 석면 질병

- 원발성 악성종피종(잠복기 약20~35년)
- 원발성 폐암(잠복기 약 20~40년)
- 석면폐증(잠복기 약 15~40년)

● 구제대상자

- 석면(석면광산 인근 거주자, 작업자)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(단 타 법률에 의거 급여를 받은 자 제외)

● 관련 법 규

- 석면피해구제법

● 시행일

- 2011. 1. 1부터

● 관련부서

- 환경보전과 환경영책팀(☎ 540-2334)

14.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

● 현 행

■ 현행 납부방식 (2가지)

- ① 고지서납부 :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및 수납창구를 이용한 납부방식
- ② 전자납부 : 인터넷 지로사이트(<http://www.giro.or.kr>)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한 납부방식

● 달라지는 내용

■ 추가 납부방식 (2가지)

- ① 가상계좌납부 :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, 전화, CD/ATM기 등을 통해 무통장입금 하여 납부하는 방식
- ② 자동이체납부 : 신청자에 한해 연2회(3월/9월)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(자동차분에 한함)

● 시 행 일

- 가상계좌납부 : 2010. 7. 1 부터
- 자동이체납부 : 2011. 1. 1 부터

● 관련 부서

-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(☎ 540-2331)



15. 보육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확대 시행

● 목 적

-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준수의무 등을 확대 시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부여

● 주 요 내 용

-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연면적 기준이 860m²이상에서 430m²이상으로 확대
-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사, 점유사 또는 관리사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2011.3월 까지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함.

● 관 련 법 규

- 디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부칙

● 시 행 일

- 2011. 1. 1부터

● 관 련 부 서

-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(☎ 540-2440)

5. 도시계획 분야

16. 용도지역별 건축제한(허용건축물) 개선

● 현 행

- 용도지역 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
 - 주거지역 내 창고시설 및 운동시설, 축사

● 달라지는 내용

- 용도지역 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조례로 일부 위임 및 개선
 - 주거지역 내 창고($1,500\text{m}^2$ 미만)
 - 주거지역 내 운동시설(높이 및 규모 설정 가능)
 - 축사(규모 제한 설정 가능)
- 생산관리지역 내 가능한 식품 관련 제조업소 정의 개선
 - 해당 지역 생산품에 대한 1차 가공 식품에 한함

● 관련 법 규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● 시 행 일

- 2011. 3. 1부터 법령 개정 시행

● 관련 부 서

-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(☎ 540-2467)

16. 개발행위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

● 현 행

-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(20m이내)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.

● 달라지는 내용

-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권역, 공장입지유도지역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역은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
- 그 외 지역은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강화

● 관 련 법 규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-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
 -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(수립예정)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● 시 행 일

- 2011년 3월(예정). 단, 시·군 어건에 따라 2년간 유예 가능

● 관 련 부 서

-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팀(☎ 540-2711)